

## [내용증명]

수 신 : KT노동조합 정윤모 위원장

2017. 10. 1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정자동206)



발 신 : KT노동조합 중앙위원장 예비후보 조합원 이상호 (010-7223-9790)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57(청파동3가), 3층

이 우편물은 2017-10-18  
제 316204004421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서울남영동우체국우체국장

대한민국 KOREA

제 목 : KT노동조합 각급대표자 공고일시 사전공개 및 선거관리 위탁 2차 촉구

### 1. 관 련

- 가. KT노동조합규약 제48조[각급 조직의 대표자 선출]
-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 라. 선거일정 사전공개 및 선거관리위탁 1차 촉구 내용증명(2017.9.28)

2. 제 13대 KT노동조합 각급대표자선거에 중앙위원장 후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후보 조합원 이상호입니다.

3. 그 동안 각급대표자 선출시 선거일정(선거공고일, 후보등록기간, 투표일 참관인 신청기간, 투표일시 등)을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함에도 한번도 사전에 일정 공지를 하지 않았고, 2017년9월28일자 내용증명을 통해 선거일정을 2017년10월13일까지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귀하께서 묵살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KT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각급대표자 선거일정(11.1~12.10)과 선거준비작업 등을 감안하여 역산한다면 선거공고일(투표일로부터 15일전 공고)등 선거일정은 본 조합원의 요구대로 즉시 공개되어야 마땅 합니다.

4. 매번 선거공고를 친사용자 후보측의 싹쓸이 추천을 오전에 받아 놓은 상태에서 오후 늦게 기습적으로 공고하여 공고일 포함 3일 이내 조합원 추천을 받아 후보등록해야 하는 타 후보측의 후보등록을 방해해왔던 전례가 있었기에 이번에는 공고일자뿐 아니라 공고시간 까지를 명시하여 사전에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 할 것을 요구합니다. 노조법과 규약대로 균등하게 조합활동에 참여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5. 한편 선거관리를 총괄하는 KT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동안 친사용자 후보에게 유리하게끔 선거지침 및 투표관리가 편파적으로 운영되어 경쟁 후보로 출마한 조합원으로부터 법적 쟁송을 반복해서 제기당해왔던 점을 고려하고, 공정선거를 담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전체를 중립적인 국가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것을 촉구합니다.

6. 본 조합원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한 답변서를 2017년10월20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